

#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지부학회 설립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##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- ① 이 규칙은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(이하 '모학회'라 칭한다.) 정관 제50조 제2항에 따라 지부학회(이하 '지부'라 칭한다.)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지부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무는 모학회 총무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칭한다.)에서 관장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.

## 지부의 설립

### 제2조(지부의 신청)

- ① 지부의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 신청관련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(사무국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지부승인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 서류는 이 규칙에서 붙임으로 정한 서식과 같다.
  - 가. 소속지부장 추천서
  - 나. 서약서
  - 다. 이력서
  - 라. 신분증 사본
  - 마. 최종 졸업증명서
  - 바.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재직증명서 등
  - 사. 지부 사무실 임대계약서
  - 아. 지부운영계획서

### 제3조(지부의 승인)

- ①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지부입회비, 지부회비, 이사회비 등의 납입을 확인 한 후 회장단(학회장, 부학회장, 총무위원장)에 보고한다.
- ② 회장단은 지부승인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가 있으면 최종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나 지부장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위원회는 회장단의 최종 심사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 한다.
- ③ 신청인은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재심외한다.

#### 제4조(신청자격)

- ① 지부의 신청은 모학회의 상담분과, 교육분과, 조직분과의 전문가(Trainer) 또는 수련감독(Master Trainer)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.
- ② 단,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3개월의 준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지부의 시설기준)

- ① 지부는 상담 및 교육이 가능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지부를 신청한 사람이 대학 등 학교나 연구소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지부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기관의 시설물에 지부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,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와 지부개설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신청인이 상담 및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예비지부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. 다만 예비지부 등록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③ 예비지부의 승인절차 및 예비지부 기간 중 회비납부 등 의무사항은 일반 지부와 같다.
- ④ 현재 장소와 시설이 미비한 지부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6조(지부의 명칭 및 표기)

- ① 지부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학교 등 단체의 경우 그 학교나 단체의 명칭을 지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, 시-구-동 명칭을 사용하되 동은 괄호로 표기한다.
  - 예: 서울 강남(대치)지부, 인천 부평(산곡)지부, 부산 해운대(반송)지부
- ③ 도의 경우 도-시(군)-동(읍·면) 명칭을 사용하되 동·읍·면은 괄호로 표기한다.
  - 예: 경기 수원(팔달)지부, 경남 김해(삼계)지부, 강원 강릉(교동)지부
- ④ 신도시 명칭을 원할 경우, 신도시 명을 괄호로 표기할 수 있다.
  - 예: 경기 고양(일산) 지부
- ⑤ 기존 지부가 타 시도(市道)나 구(區)로 지부 사무실을 이전 시 지부명칭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. 단, 행정구역상 동·읍·면(同·畝·面)내에서 이전은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.

## 권리와 의무

#### 제7조 (지부의 권리)

- ① 지부는 모학회에 공동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. 모학회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부장역량개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의 권리를 갖는다.

#### 제8조 (지부의 의무)

- ① 지부는 입회시 입회비 10만원, 매년 연회비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예비지부로 등록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.
- ② 지부장의 당연직 이사로서의 연회비 10만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개인 연회비는 면제한다.

### 자격의 정지(상실) 및 재승인

#### 제9조 (재승인)

- ① 지부는 매 5년마다 지부 운영에 관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지부는 재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 서류는 이 규칙에서 붙임으로 정한 서식과 같다.
  - 가. 지부 재승인 신청서
  - 나. 사무실 임대계약서
  - 다. 최근 5년간 지부 운영 현황
  - 라. 재승인 심사비
- ④ 회장단은 지부 승인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가 있으면 최종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나 지부장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위원회는 회장단의 최종 심사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## 제10조 (자격의 정지 및 상실)

- ① 지부는 회비의 미납 및 감사결과 지부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회비의 납부를 명하거나 승인기준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계속하여 2회 연회비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감사결과 지부승인 요건의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(상실)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③ 자격을 정지(상실)했을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지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통보 내용에는 구제절차를 명기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(구제절차)

- ① 지부의 정지(상실)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(상실)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장단에서 재심할 수 있다.

## 지부의 활동

### 제12조 (지부의 활동)

① 지부는 다음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- 연 5회 이상 월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TA관련 연구스터디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연 1회 이상 프로파일러분석사 및 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.

② 지부는 지부 재승인 조건으로 제1항의 활동목표를 60% 이상 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정해진 활동은 기타 교류분석의 상담과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13조 (지부의 활동제한) 지부는 교류분석이론이 아닌 교류분석이론의 철학과 이념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다른 상담 및 교육이론을 같은 지부 내에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없다.

### 부칙

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르되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  
위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.